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) 계약기간

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2) 계약목적

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,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(서비스)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)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(1)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.

(2)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.

■ 수급자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
(2026년 기준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,	1,208,900	676,320

■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역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6%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%

■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당 금액

구분	방문당 금액
30분 이상	17,450
60분 이상	25,320
90분 이상	34,120
120분 이상	43,430
150분 이상	50,640
180분 이상	57,020
210분 이상	63,530
240분 이상	70,080

■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당 금액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	
차량 내 목욕(60분 이상)	88,990
가정 내 목욕(60분 이상)	80,23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
(60분 이상)	50,100

4)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(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
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
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

④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

(2) 신원인수인의 의무

①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

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
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 (해외이주,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)

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.

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
5) 계약의 해제

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, 해제가 가능하다.

(1)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

(2)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(3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

(4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

(5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

(6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(7)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.